

2018년도 장성읍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4. 9.(월) ~ 4. 13.(금) / 5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4명(감사 3, 인력지원 2)
- 감사범위 : 2015. 11. 14. ~ 2018. 4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3	4	19	23/227	3/207	20/20	-	
원 처 분	10	1	9	-	-	-	-	훈계 3 주의 2
현지처분	13	3	10	23/227	3/207	20/20	-	

※ (회수) 공사비 과다집행, 공가 부당사용, 민원서류 수수료 미징수

<< 2015년도 감사결과 >>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3	8	15	4/222	2/212	2/110		
원 처 분	15	4	11	2/212	2/212			훈계 2 주의 2
현지처분	8	4	4	2/110		2/110		

※ (회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사 산재·고용보험료 정산
(추징) 공사계약 인지세, 주민등록증 발급급 과태료

3

지적사항

원 처 분

1. 공사 계약업무 및 설계·공사감독 업무추진 부적정(주의)

- 계약시 설계서 미작성·미첨부 : 35건(2015 **마을회관 앞 주변정비공사 등)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예산집행품의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예산 집행 : 3건 151,750원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3건	151,750	
2016.02.03	☆ ◎△차량 유류 구입	63,850	집행품의 시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집행
2016.02.24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42,900	집행품의 시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집행
2016.02.26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급 직원 격려	45,000	집행품의 시 담당 및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집행

-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 : 1건 15,000원

- 읍 청사 정원 정비를 위한 전◇◇ 유류 구입

3.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소홀(주의)

- 유연근무자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 미등록

- 지각 3일, 퇴근 미등록 51일

유연근무자	일자	부당사항
계	54일	
지방▣♣주사 김**	2017.10.19.~2017.10.24. 기간 중 3일	퇴근 미등록
	2017.10.30.~2017.12.29. 기간 중 29일	퇴근 미등록
	2017.11.10	출근 시간 지각
	2018.01.02.~2018.01.28. 기간 중 13일	퇴근 미등록
지방▣♣주사보 조**	2018.03.02.~2018.04.09. 기간 중 6일	퇴근 미등록
	2018.03.30. / 2018.04.06	출근 시간 지각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소홀(시정)

-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내역 미공개 : 2015. 11월 ~ 2018. 4월
-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인적사항 매년 미공개 : 2015. 11월 ~ 2018. 4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시 청구서와 근무상황부 확인이나 징구없이 지출 : 2015. 11월 ~ 2018. 4월

5. 이륜자동차 신고 등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 문서대장 미등록 및 결재없이 문서처리 : 281건
- 불필요한 서류 징구 : 1건(이륜자동차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서를 수리하면서 사용폐지신고서도 접수처리)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주의)

- 2016~2017년도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영농규모 면적, 농외소득,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학자금 지원 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 : 68명
- 또한 2016~2018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검토결과(지원 여부)를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에게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음.

7.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2016.1분기~2018.1분기까지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시 책정일자 미확인으로 매분기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과소 지급

연번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	수급자 책정일	지급시기	지급 현황		미지급
						정정 매주	지급 매주	
계						393	189	204
1	조**	47.01.00	1	17.11.27	'18.1분기	15	9	6
2	박**	42.12.00	1	17.12.01	'18.1분기	12	9	3
3	한**	41.11.00	1	17.12.12	'18.1분기	12	9	3
4	조**	63.03.00	1	17.12.28	'18.1분기	12	9	3

8. 효도권 지급 소홀(주의)

- 장기입원자 14명에 대해 585매를 과다 지급
- 2016년 180매, 2017년 279매, 2018년 126매

9.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처리절차 부적정(주의)

○ 문서 미등록 및 결재권자 선람없이 내부결재 후 처리

구 분	처리건수	문서 미등록	미선람	비 고
계	2,066	2,057	1,578	
2015년	195	193	-	
2016년	842	842	583	
2017년	872	865	838	
2018년	157	157	157	

10.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주의)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업무 소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받지 않고 전입세대 열람 : 30건
(2016년 16건, 2017년 2건, 2018년 12건)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입세대 열람 : 1건

○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시 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한 최고사항과 직권조치 사항을 읍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나 읍 게시판에만 공고

○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이장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하나 미확인 : 36건
(2016년 6건, 2017년 28건, 2018년 2건)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 발급대상자 신청기간 잘못 고지 : 18명(2001.1월생)

현 지 처 분

1. 수의계약 업무 소홀(주의)

○ 대상사업 : 2015 ①*3리 **을 농로포장공사 등 56건

- 결의서(계약서) 내용 기재누락 : 1건
- 계약 및 회계 등 첨부서류에 날짜 등 기재사항 누락 및 청구서 미등록 : 56건

2. 공사 설계변경 소홀(시정)

○ 2017 **1리 마을회관 주변 등 포장공사 외 1건 : 160천원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미시공량		시공사	비고
			수량	회수액		
계	2건			160천원		
2017 **1리 마을회관주변 등 포장공사	3,080	2017.3.21 ~2017.3.30	162㎡ (0.03*45*457)	43천원	(주)**건설	양생비닐
2017 **동 마을회관주변 등 정비공사	5,540	2017.4.18. ~2017.5.1	판재거푸집 3.0㎡ 양생비닐 166㎡	117천원	(주)*신	판재거푸집 양생비닐

3. 사업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 등 소홀(주의)

○ 대상사업 : 2016 **동 마을회관 앞 주변 정비공사」 등 7건

⇒ 물품검수자, 준공검사자, 공사감독 미임명

4. 공가 사용 부적정(시정, 회수)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통보 대상자로 연가조치 후 검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공가를 사용하여 검진함.(1명, 47,000원 회수)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3건 179천원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2015.12.24	연말 각종 시책업무 마감에 따른 ◎◆ 노고 격려	26,2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2016.03.08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구입	102,9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2016.06.2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구입	50,5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12건 1,409천원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2015.11.18	합동직무 ◎◆ 사기진작을 위한 ▽●제공	54,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5.11.18	전출직원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 위한 ■◆ 구입	100,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6.03.08	전출직원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 구입	120,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6.03.28	장성읍 공직자 옐로우시티 ◎◆ 제작 배부	300,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2016.09.19	민원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계 및 ○♡계 직원 격려 식사	130,5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7.06.12	시가지 꽃묘 관리에 노고가 많은 ☆◇계 직원 격려 식사	63,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7.12.12	지방세 체납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담당◎◆ 격려 식사	94,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7.12.12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계 및 담당급 직원 식사	184,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8.02.07	시방역 및 예방담당 ◎◆ 격려 식사	88,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8.02.20	시초소 ◎㊦담당 근무자 식사	67,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8.03.08	☆◇계◎◆ 및 휴일♣◀근무자 격려 식사	132,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2018.03.15	2018년 ○▽★○■신청 담당공무원 격려 식사	76,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6.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수수료를 1건당 1,000원씩 징수하여야 하나 2016. 1 ~ 2017. 9월까지 장성읍 ◎◆리 임** 등 20명에게 수수료 20,000원 미징수 ⇒ 추징

7. 농지원부 일제정리 추진 미흡(주의)

- 2016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리 계획 수립하지 않고 시스템도 미 정비 : 125건

총정비 대상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농가	사 망 말소자	한세대 중복 농지원부	중복등재 농가주, 농가구성원	경 작 미달자
125	35	2	4	12	2	71

8.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및 모니터상담 추진 소홀(주의)

(단위 : 명)

연도별	복지대상자			비 고 (계획수립일자)
	상담계획	상담실시	상담미실시	
계	894	652	242	
2016	480	238	242	2016.02.17
2017	414	414	-	2017.04.24
2018	424	86	추진중	2018.01.16

9.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2015.11~2018.3월까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해 매월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지연 지급

연도별	지원인원	지원횟수	지연지원 횟수	비 고
합 계		29	23	
2015	168	2	2	
2016	168	12	9	
2017	149	12	10	
2018	128	3	2	

10.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칩 수불부 대장관리 소홀(주의)

- 2015.11~2018.4월까지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 수불부 관리대장에 실제 배부일을 기재하여야 하나 징수결정일로 기재 : 27건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대장작성 오류건수	비 고
계		415	27	
쓰레기봉투	2015	29	5	
	2016	187	16	
	2017	150	4	
	2018	49	2	
음식물 칩	2016	59	3	

11. 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수수료 징수 부적정(주의)

- 대부계약 갱신수수료가 1건당 3,000원이나 5,000원 징수 : 110필지
- 수수료 : 갱신 3,000원, 신규 5,000원

연 도 별	계약만료 (2016.12.31.)	갱신 (2017.1.1.~ 2021.12.31.)	신규	비고
계	116	110	6	
도유재산	18	17	1	
군유재산	98	93	5	

12.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주의)

○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이장 사실확인 누락하고 민방위대 편성

연 도 별	대수	대원명부	신규편성	제외	비고
2016년	27	1,248	10	803	
2017년	27	1,027	7	794	
2018년	27	994	7	783	

13.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

○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

연 도 별	이 송 현 황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건	매	건	매	건	매	
계	1,692	1,917	1,342	1,539	350	378	
2015년	102	116	61	73	41	43	
2016년	715	807	582	663	133	144	
2017년	667	761	510	591	157	170	
2018년	208	233	189	212	19	21	

2018년도 장성읍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3건	4	19	23/227	3/207	20/20	-
1	원 처 분	공사 계약업무 및 설계공사 감독업무 추진 부적정		○				훈계 주의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훈계 주의
3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소홀		○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소홀	○					
5		이륜자동차 신고 등 민원처리 부적정		○				훈계
6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7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8		효도권 지급 소홀		○				
9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처리절차 부적정		○				
10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				
1	현 지 처 분	수의계약 업무 소홀		○				
2		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		2/160	2/160		
3		사업추진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 등 소홀		○				
4		공가 사용 부적정	○		1/47	1/47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6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20/20		20/20	
7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8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상담 추진 소홀		○				
9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				
10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찌수불부 대장관리 소홀		○				
11		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수수료 징수 부적정		○				
12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		○				
13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훈계, 주의

제목 : 공사 계약업무 및 설계 · 공사감독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감독자의 감독업무 제2항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규정에 따라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는,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 상황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동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2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등 복합공종을 추진하려는 공사에는 설계서가 필수적 요소임과 함께 계약 시 설계서를 생략하여도 되는 경우를 명시한 근거는 없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표 1】의 현황과 같이 『2015 **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4건을 계약·공사를 추진하면서 사무분장상 설계 및 감독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량이 폭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서를 작성 또는 첨부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받은 임의대로 적은 단가 등이 적용된 견적서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및 준공하였다.
- 이에 따라 품셈 및 각종 지방기준의 적용된 지방서와 설계내역의 세부사항이 없어 시공기준 및 수량, 단가와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을 알 수 없고, 공종별 시공 시에 현장여건 등의 상이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견되었더라도 당초 설계도서의 미 작성으로 말미암아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변경절차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그리고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의 확인과 같은 사실상 감독 및 준공검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또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과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라는 내용의 공사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와 설계·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1】 현 황

사업명	도급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비고
계	34건				
2015 **마을 회관 앞 주변정비공사	(주)**건설	2,662	2015.11.20	2015.12.2	
2015 **마을농로포장공사	(유)**토건	4,850	2015.11.24	2015.12.8	
2016 마을주변 도로옆 성**리 **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주)*신	2,980	2016.3.14	2016.3.22	
2016 안**리 **마을 위험구간 가드레일설치 및 농로보수 포장공사	**건설(주)	3,900	2016.3.21	2016.4.4	
2016 **동마을 진입로 개거덮개설치공사	(유)**토건	4,200	2016.3.17	2016.4.12	
2016 **동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	(주)*신	2,970	2016.3.17	2016.3.22	
2016 **마을 배수맨홀 설치공사	(주)**건설	2,475	2016.3.17	2016.3.21	
2016 ***마을 배수 수로관 설치공사	(유)**산업개발	2,640	2016.3.29	2016.4.6	
2016 장성●◆■ 2층 지분판넬 방수공사	**설비상사	3,410	2016.5.4	2016.5.12	
2016 ***리 *** 연구소 진입도로정비공사	(유)**토건	2,250	2016.5.12	2016.6.7	
2016 ***리 **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유)**산업개발	1,980	2016.7.14	2016.7.25	
2016 ***리 **보 보수공사	(유)**토건	5,300	2016.10.25	2016.12.6	
2016 장성●◆■외 1개소 진출입로등 정비공사	**설비상사	5,550	2016.10.19	2016.11.16	
2016 ■**리 **마을 진입도로정비공사	(주)**건설	2,010	2016.10.13	2016.10.26	
2016 **2동 배수로 정비 및 **2리 가드레일설치공사	(주)**건설	2,950	2016.12.1	2016.12.12	

사업명	도급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비고
2016 ***리 **마을 배수로맨홀설치공사	(유)*신	1,078	2016.12.9	2016.12.19	
2017 **리 농업용수 급수관 등 설치공사	(주)**건설	2,180	2017.3.30	2017.4.14	
2017 **동 여성노인당 콘크리트 포장공사	(주)*신	4,900	2017.6.12	2017.6.28	
2017 **리 급수관 보수공사	(주)**건설	1,180	2017.6.21	2017.7.5	
2017 *** **마을 도로배수관 설치공사	(주)**산업개발	5,780	2017.9.7	2017.9.26	
2017상**리 배수관 및 **마을 급수관설치공사	(주)**건설	5,970	2017.9.19	2017.9.20	
2017**1동 배수관 정비공사	(주)*신	1,240	2017.9.26	2017.10.16	
2017 **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및 **안길 집수정보수공사	(주)**산업개발	7,080	2017.10.12	2017.10.23	
2017 **리 모정 차양설치 및 도장공사	**건축사	3,900	2017.11.10	2017.12.4	
2017 **마을회관 창호교체 및 외부도장공사	**건축사	4,810	2017.11.10	2017.12.4	
2017 마을회관 외벽도색 및 현관문 교체공사	(주)**산업	3,430	2017.11.14	2017.12.1	
2017 **3동마을 개거덮개 및 이중벽관 설치공사	(주)**산업개발	4,300	2017.11.16	2017.12.1	

[처분지시]

공사 계약시 설계서를 첨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 추진 및 준공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훈계, 주의

제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징수관과 재무관은 읍·면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아래와 같이 집행 품의시 최종결재권자 결재 없이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3건	151,750	
2016.02.03	☆ ◎△차량 유류 구입	63,850	집행품의 시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집행
2016.02.24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42,900	집행품의 시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집행
2016.02.26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급 직원 격려	45,000	집행품의 시 담당 및 최종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집행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야 유류 구입비를 아래와 같이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지출일자	적 요	금액(원)	부당사항
2016.05.19	읍 청사 정원 정비를 위한 전◇◇ 유류 구입	15,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처분지시]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시 반드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3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생활의 생산성 향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근 또는 퇴근 지정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표 1】 과 같이 유연근무자 2명이 유연근무일에 퇴근 등록(지문인식기) 하지 않은 횟수가 51일, 유연근무 시작 시간보다 출근시간이 지각하여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을 통해 출근 등록한 횟수가 3일 있어 출·퇴근 등록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유연근무 신청일에 복무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표 1】 유연근무자 근무현황

유연근무자	일자	부당사항
계	54일	
지방▣주사 김**	2017.10.19.~2017.10.24. 기간 중 3일	퇴근 미등록
	2017.10.30.~2017.12.29. 기간 중 29일	퇴근 미등록
	2017.11.10	출근 시간 지각
	2018.01.02.~2018.01.28. 기간 중 13일	퇴근 미등록
지방▣주사보 조**	2018.03.02.~2018.04.09. 기간 중 6일	퇴근 미등록
	2018.03.30. / 2018.04.06	출근 시간 지각

[처분지시]

- ① 유연근무자는 복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 지문 등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등)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라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 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 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 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2015. 11 ~ 2018.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기별로 수입·지출 내역과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 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5. 11 ~ 2018.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매주 1회 ~ 3회 주민자치 센터를 이용하는 노래교실, 요가 등의 10개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강 사료를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지급 요청받은 후 청구서와 근무상황부 등의 확인이나 징구 없이 강사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시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라며, 강사료 지급시 청구서 등 지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③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훈 계

제목 : 이륜자동차 신고 등 민원처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장성읍에서는 이륜자동차 민원(사용신고, 폐지, 주소변경)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88건을 처리하였다.

① 문서대장 미등록 및 결재없이 문서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 접수된 민원을 문서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상급자의 선람과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6. 7. 4. ~ 2017. 5. 19. 현재까지 281건에 대하여 문서를 등록대장에 접수하지 않고, 상급자의 선람만 받은 채, 읍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자동차 정보 시스템상으로만 처리하고 민원서류를 완결한 사실이 있다.

② 불필요한 서류 징구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00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이륜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와 이륜자동차를 멸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확인하여 번호판을 부착·봉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는 첨부서류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2017. 8. 24. 장성읍 ◯◆■길 00-0 나**이 제출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수리하면서 이륜자동차번호판(전남 장성가 **57)이 훼손 및 헐어서 못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새로운 번호(전남장성가**27)를 부여하였으며, 필요하지 않은 민원서류인 사용폐지신고를 접수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 ① 민원서류가 접수된 경우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후 선람을 득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시기 바라며,
- ② 또한, 이륜자동차 업무 추진시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며,
- ③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위법·부당 내역]

- 장성읍에서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읍면장은 건강보험 농외소득 등을 철저히 검증, 부당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별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매 분기별 대상자 선정시 확인사항)

조사항목	확 인 사 항(매분기별)
기본사항	□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영농규모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등
농외소득	□ 건강보험공단(변경사유 발생시)
타 장학금 수혜	□ 관련기관 조회(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장, 의용소방대 등)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2016~2017년도에 장성읍 ** 422 강** 외 67명에게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영농규모 면적, 농외소득,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학자금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 또한, 2016~2018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함에도, 장성읍에서는 읍장에게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신청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는 등 업무를 미흡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현황

연도별	지급 대상 (명)	지 원 금 액(천원)					비 고 (확인여부)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89	65,961	17,796	15,266	15,509	17,171	
2016	38	33,876	7,475	8,350	8,593	9,345	부
2017	30	27,362	5,600	6,916	6,916	7,826	부
2018	21	4,723	4,723				여

[처분지시]

- ①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자 선정시 확인사항(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영농규모 면적, 농외소득,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학자금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드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 대상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1인 가구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급기준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함에도

- 장성읍에서는 2016년부터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시 책정일자 미확인으로 과소 지급하여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수급자 쓰레기봉투 과소지급 현황

연번	성명	가구원	수급자 책정일	지급시기	지급 현황		미지급
					적정 매수	지급 매수	
계					393	189	204
1	조**	1	17.11.27	'18.1분기	15	9	6
2	박**	1	17.12.01	'18.1분기	12	9	3
3	한**	1	17.12.12	'18.1분기	12	9	3
4	조**	1	17.12.28	'18.1분기	12	9	3

연번	성 명	가구원	수급자 책정일	지급시기	지급현황		미지급 매수
					적정 매수	지급 매수	
5	박**	4	17.12.28	'18.1분기	24	18	6
6	심**	1	17.05.02	'17.3분기	12	9	3
7	박**	1	17.05.26	'17.3분기	15	9	6
8	심**	2	17.06.23	'17.3분기	24	18	6
09	나**	1	17.08.11	'17.3분기	9	0	9
10	선**	1	17.02.01	'17.2분기	15	9	6
11	전**	1	17.02.06	'17.2분기	15	9	6
12	박**	1	17.02.07	'17.2분기	15	9	6
13	최**	2	17.02.28	'17.2분기	30	18	12
14	오**	2	17.01.06	'17.1분기	18	0	18
15	신**	1	16.10.13	'16.4분기	9	0	9
16	장**	2	16.10.14	'16.4분기	18	0	18
17	심**	1	16.10.16	'16.4분기	9	0	9
18	임**	1	16.11.02	'16.4분기	6	0	6
19	문**	1	16.05.02	'16.3분기	15	9	6
20	기**	1	16.06.08	'16.3분기	12	9	3
21	오**	1	16.06.23	'16.3분기	12	9	3
22	김**	1	16.02.01	'16.2분기	15	0	15
23	정**	1	16.02.05	'16.2분기	15	9	6
24	김**	1	16.02.05	'16.2분기	15	9	6
25	고**	1	16.03.28	'16.2분기	12	9	3
26	김**	1	16.04.07	'16.2분기	9	0	9
27	나**	4	16.01.05	'16.1분기	18	0	18

[처분지시]

앞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효도권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읍에서는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도권을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기준으로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전입자가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효도권 지급 대상 중 장기입원자 14명에 대하여 585매를 과지급하였다.

- 또한 효도권 배부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에게만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령대장에 수령일, 수령인, 서명 등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하고 지급 하는 등 효도권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효도권 과다지급(장기입원)대상자 현황

연번	성명	마을명	2018	2017				2016				과지급 배수
			분기	분 기				분 기				
			1	1	2	3	4	1	2	3	4	
계	14명		126	90	81	54	54	45	45	45	45	585
1	김**	총무1	9	9	9	9	9	9	9	9	9	81
2	박**	총무1	9	9	9	9	9	9	9	9	9	81
3	이**	부흥	9	9								18
4	김**	부흥	9									9
5	최**	매화4	9	9	9							27
6	노**	수산3	9	9	9	9	9	9	9	9	9	81
7	최**	유탕1	9	9	9	9	9	9	9	9	9	81
8	주**	유탕1	9									9
9	신**	대창1	9									9
10	나**	대창1	9									9
11	이**	수산2	9	9	9	9	9	9	9	9	9	81
12	손**	성산3	9	9	9							27
13	옥**	단광2	9	9	9							27
14	김**	매화1	9	9	9	9	9					45

[처분지시]

- ① 효도권 지급시 행복e음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입원자 및 전입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③ 또한, 2015년과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니, 효도권 지급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처리절차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등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고,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으며,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읍면의 전결대상사무는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별표 7과 별표 12에 따라 전결 처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를 문서 접수하여 선람한 이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수리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문서 등록 없이 읍장의 선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수리 내부결재만 득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리 건수	문 서 미등록	미선람	비 고
계	2,066	2,057	1,578	
2015년	195	193	-	
2016년	842	842	583	
2017년	872	865	838	
2018년	157	157	157	

[처분지시]

- 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후 선람을 득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장성읍	2018	주 의			

제목 :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위법·부당 내역]

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업무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정일자부여 사실을 통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위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증명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전입세대를 열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6년부터 2018. 4월 감사일 현재까지 30건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하였다.

또한, 장성읍 문화로 00-00의 임차인인 전*일이 임대 계약기간(2014. 4. 1 ~ 2016. 3. 31)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첨부하여 은행 제출용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자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2016. 4. 7.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30	16	2	12	

②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는 최고·공고(읍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하며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조치를 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2016년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시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한 최고사항과 직권 조치사항을 공고하면서 읍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나 읍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③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15일 이내에 그 신고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관할 이장에게 보내고 이장은 15일 이내에 확인하며 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표 2】 과 같이 총36건에 대해 이장 사후 확인을 받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전입신고 사후 미확인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36	6	28	2	

④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증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성읍에서는 【표 3】 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8명에게 신청기간을 2018. 2. 1 ~ 2019. 1. 31일로 고지하여야 하나 잘못 고지하여 안내한 사실이 있다.

【표 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신청기간 잘못고지 현황

출생년월	인원	신청기간 고지내역	발급통지일	통지방법	비고
'01. 1월	18명	'18.02.01~'18.01.31	'18.01.23	등기우편	신청기간 잘못고지

[처분지시]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